

#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과정과 그 의미

통신사업자 구도에 일대 변혁의 바람을 몰고올 신규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이 지난 6월 10일자로 마무리 되었다. 그 선정과정과 의미에 대하여 작업에 직접 참여한 정보통신부 관계자로부터 들어본다. <편집자 주>

김 정 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통신기획과 행정사무관

## 선정경위 및 목표

정부가 신규통신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주된 경위는 WTO체제 출범 등 정보통신의 대외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적으로는 경쟁구도 정착을 통한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적인 유지와 통신사업자의 저변확대를 통한 초고속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의 목표는 첫째,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둘째, 통신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발전 계기 마련, 셋째, 통신서비스업의 대외진출 촉진, 넷째, 정보통신관련 제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다섯째, 최대다수 기업에게 참여기회 제공, 여섯째, 관련 기술인력의 훈련기회 확대 및 대량배출, 일곱째, 정보화마인드의 확산 등이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 선정목표와 경제력 집중방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심사방법 및 기준

심사는 크게 2단계로 이루어졌는데 1차 사업계획서 심사와 2차 기술개발지원계획서 심사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차 사업계획서 심사는 허가의 결격사유 등 자격심사, 사업계획서 심사(계량, 비계량, 청문)로 분리하여 실시하였고, 2차 기술개발지원계획서 심사는 출연금 심사로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10점),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10점),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10점),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30점), 기술계획 및 기술적능력의 우수성

(20점),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20점)이었으며, 여기에 기업경영의 도덕성,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체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지원 계획, 컨소시엄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균형 있게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이 보완되었다.

이는 신규통신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기업 소유집중 억제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부 경제정책의 기초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그간 대형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어야만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러한 기준의 추가는 국민들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구체적인 세부심사기준은 1996년 4월 19일 발표되었는데 심사기준은 7개 역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허가유형 및 사업권이 다른 경우에도 별도로 작성하였다. 그래서 PCS의 경우 장비제조업체군, 비장비제조업체군, 한

국통신(공정경쟁계획서 및 자회사 설립방안)으로 구분하고, 주파수공용통신의 경우 전국 및 수도권권,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발신전용휴대전화의 경우 전국, 수도권,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심사기준을 확정지었다.

심사의 기본원칙은 세부심사항목에 따라 계량, 비계량, 청문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비계량평가인 사업계획서 평가와 청문의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으로 점수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심사는 세부심사항목별로 평가하여 합산하지만, 당초 가장 효율적으로 선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6개 심사항목별로 관련 세부심사항목 또는 관련 심사항목간의 일관성 및 연계성과 각 심사사항에 대한 총체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순점이 발견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각 심사사항별 배점의 10% 범위내에서 감점처리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부심사항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선정과정

정부는 1995년 7월 4일 소위 제3차 통신사업 구조개편으로 일컬어지는 ‘통신사업 경쟁력강화 기본정책방향’을 발표함으로써 신규기간통신사업자 선정작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발표문의 주된 내용은 첫째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TRS), 발신전용휴대전화(CT-2), 무선데이터, 무선호출 등 5개 무선통신분야와 국제전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등 2개 분야 총 7개 분야 신규 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과 둘째, 사업계획서 심사에 이은 출연금 최고액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한편 정부는 이와 아울러 통신사업구조와 관련하여 기존 복점체제의 통신사업에는 추가경쟁 도입, 신규 통신사업에 대하여는 초기부터 경쟁을 도입하며, 지역사업에 지역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30대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4가지 원칙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이어 7월 26일 통신사업경쟁력 강화 기본정책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여기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8월 11일 서비스별 선정업체수와 허가신청 자격, 허가신청 서류, 2차 출연금 평가방안 등을 제시한 허가신청요령 1차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는 8월 16일까지 1차 시안의 내용에 관한 1차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동원산업, 금호텔레콤 등 95개 기관·단체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PCS의 무선접속방식을 둘러싼 사업추진업체간의 공방, 2차 출연금 심사방식에 따른 대기업 특혜시비 등 논란이 제기되어, 정부에서는 선정

방안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과 업체의 불만을 해소한 후 선정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업체에게도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9월 7일 당초 1995년 연말로 잡혀있던 사업자 선정시기를 1996년 상반기로 조정하였다.

정부는 이어 10월 20일 허가신청요령 제2차 시안을 발표하여 그간 논란을 거듭하던 PCS 무선접속방식을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으로 확정하고, 무선호출사업의 지역사업자 수를 2개에서 1개로 축소조정하도록 하였다. 이어진 제2차 전자공청회('95. 10. 20~'95. 10. 27)를 통해 정부는 한국통신, 무선호출사업자 등으로부터 총 71개 의견 및 질의를 받아 이에 답변하였다.

이러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부는 1995년 12월 15일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계획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담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허가신청요령이 공고된 후 불거져 나온 이슈는 또다시 사업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허가신청요령을 통해 제시한 내용은 사업계획서평가(1차), 일시출연금 최고액 제시(2차), 추첨식(3차)을 모두 절충한 방식이었다. 이는 기술력 평가에 50% 비중을 둔 1차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적격업체를 가려내고, 이에 역무별로 정해진 상하한선 내에서 출연금을 제시, 최고액으로 평가하며, 출연금을 동일하

게 제시한 경우 추첨으로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허가신청요령에 제시된 역무별 출연금 상한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 사업권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던 업체들이 당연히 출연금 상한선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추첨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후 업계의 수주전이 조기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선정방법에 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아 정부는 선정방법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다.

이는 1996년 3월 8일 정부가 허가신청요령 수정공고를 발표함으로써 현실화되어, 출연금이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는 당초 선정방식을 1차심사 강화, 추첨배제라는 사실상 사업계획서 평가 방식으로 수정하고, 경제력 집중방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심사기준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의 도덕성, 5년간 신규 사업진출유무, 중소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 등이 새로운 심사항목으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가장 경쟁이 치열한 PCS사업의 경우 4대 통신장비제조업체중에서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커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통신장비제조업체의 건전한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통신 자회사, 통신장비제조업체군, 비장비제조업체군으로 나누어 선정키로 하고, 국제전화사업의 경우 가능한 많은 기업의 참여를 수용하여

소유·경영을 분리하는 신청법인을 우대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시점을 기해 업계의 움직임이 긴박히 전개되어 사업추진 주체간의 합종연횡이 이루어졌다. 국제전화의 경우 8개의 추진사업체가 하나의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PCS에서 삼성과 현대, 금호와 효성, 한솔과 데이콤이 연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때 국제전화의 단일콘소시움인 (주)한국글로벌텔레콤이 공정경쟁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업계에서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구체적인 심사준비를 착실히 진행시켰다.

1995년 4월 15일 허가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9개월여동안 준비했던 사업자 선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허가신청서류의 접수는 3일간 이루어졌는데 접수결과 개인휴대통신장비제조업체군에 2개법인, 비장비제조업체군에 3개법인, 주파수공용통신(전국)에 4개법인 등 총 7개 역무에 53개 법인이 허가를 신청하였다. 접수가 끝난 뒤 정부는 4월 19일 허가심사기준을 공표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로 이송시킨 뒤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였다.

자격심사반은 정보통신부 공무원 30명과 KISDI, ETRI, 회계법인 직원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

되어 허가신청법인의 결격사항 유무 등 법적사항과 허가신청요령상 중복신청제한 위반여부 등을 심사하였으며, 허가신청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청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먼저 비계량평가는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통신 도고수련관에서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심사는 전문분야별로 대학, 연구기관 및 사회단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로 위촉된 42명의 심사평가위원을 3개반(각반은 영업부문 7명, 기술부문 7명으로 구성)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7인의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그 항목의 점수로 하였으며, 각 항목의 가중치는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 기간중에 42명의 심사위원 중 7명을 선발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계획서 및 한국통신 자회사 설립방안 평가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이후 6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청문심사가 통신개발연구원에서 이루어졌다. 청문심사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한 PCS(장비제조업체군, 비장비제조업체군) 및 TRS(전국)를 대상으로 통신사업에의 참여타당성, 정보통신관련중소기기 제조 및 소프트웨어산업육성 종합계획 및 그 실천방안 등 5개 항목에 대해 7인의 심

사·평가 위원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인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에서는 계량평가가 이루어졌는데 허가신청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재무구조에 대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생산성을 평가하였고, 전산처리과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산전문가,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이 복수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세가지 심사·평가 작업이 6월 5일 모두 마무리 되면서 사업자 선정은 마지막 집계작업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집계작업은 6월 7일부터 6월 10일 오전까지 이루어졌는데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느라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에서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집계작업 완료직후 1차 심사를 통과한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정통부차관이 위원장으로 정보통신지원국장과 체신금융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린 출연금 심사평가가 이루어졌다. 그후 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최종결과는 6월 10일 오후 2시 이석재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해 발표되었다.

가자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PCS에서는 장비제조업체군에서 LG텔레콤, 비장비제조업체군에서 한솔PCS, 그리고 한국통신이 사업권을 획득하였고, TRS 전국은 아남텔레콤이 선정되었다. 이 밖에도 국제전화는 한국글로벌텔레콤, 전기통신화선설비임대역무는 원네트와 지엔지텔레콤, TRS 수도권은 서울TRS, 부산·경남

권은 글로벌텔레콤, 대구·경북권은 대구TRS, 광주·전남권은 광주텔레콤, 대전·충남권은 적격업체가 없었고, 제주권은 제주티알에스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CT-2 전국은 한국통신, 수도권은 나래이동통신과 서울이동통신, 부산·경남권은 부일이동통신, 대구·경북권은 세림이동통신, 광주·전남권은 전북이동통신, 충청권은 새한이동통신, 강원권은 강원이동통신, 제주권은 제주이동통신이 선정되었다. 무선데이터는 에어미디어, 인텍크무선통신, 한컴텔레콤이 무선호출(수도권)은 해피텔레콤이 선정되었다.

### 신청업체들의 미래의 역할

현재 정보통신업계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어 사실상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신규통신사업자들은 다음의 두가지 확실한 미래상황에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그 하나는 국내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삼아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세계적인 통신사업자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통신사업자는 기술개발과 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이용자에게 최고의 품질, 적정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 기업의 입장에서 그

하나는 국내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삼아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세계적인 통신사업자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통신사업자는 기술개발과 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사용자에게 최고의 품질, 적정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고, 국가적 입장에서선 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으로 정보화를 앞당기고 국민생활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에 관련된 문제이다.

신규통신사업자는 사업권 선정을 하나의 수혜로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사명과 책임이 부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산업이라 일컬어지는 정보통신산업이 우리나라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성장해서 우리의 미래를 밝혀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